

미국 농촌역사경관의 국가문화재 등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ational Register of Rural Historic Landscapes in U.S.A.

박익수*

Park, Ik-Soo

Abstract

The recent interest in historic protection of rural landscape concentrates on the cultural landscape. Historic rural landscape properties in the United States America have protected in the 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system as 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 to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the national identity and economy.

This Paper focuses on research of the 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rural landscape and applicability to Korea. The work reviews published research report, related regulations and related Bulletins. Some works were conducted by online research including a review of related webpage.

The Historic Rural Landscapes in U.S.A are identified and evaluated as historically significant districts, sites, structure, objects, and buildings according to the National Register Criteria. Those were managed as 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 and National Historic Landmarks in National Register. Government provides national preservation system and tax incentive for historic preservation of rural historic Landscapes.

키워드 : 국가문화재등록, 농촌역사경관, 문화재 보존, 문화적 경관

Keywords : National Register, Rural Historic Landscape, Historic Preservation, Cultural Landscape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농촌에 대한 친환경적 인식과 더불어 농촌경관이 어메니티를 위한 역사문화자원으로서 우리의 삶의 질에 그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농촌경관에 대한 보존·관리 및 가치창출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프론티어정신으로 자연환경을 극복하며 신대륙에 문화유산을 만들어왔고, 1960년대 이후 의미있는 역사문화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국가문화재 보존시스템 갖추어 보호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수많은 자연자산(natural property) 및 역사문화자산(historic property)이 국가문화재등록(National Register)로 등재되어 있다.¹⁾

한편 미국은 짧은 농촌발달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농촌경관을 자연경관과 더불어 역사적 장소(Historic Places)라는 문화적 경관으로 다양하게 남기고 있다. 미국에서 농촌역사경관에 대한 보존 대책은 국가문화재 보존체계를 갖추기 위한 '문화적 경관(cultural landscape)'의 보호 논의²⁾로부터 시작한다. 당시 대대적인 고속도로 건

설과 대규모 도시재개발사업 등으로 자연경관 및 역사경관의 심각한 훼손을 경험하면서, 농촌역사경관을 보호하는 프로그램 및 지침들을 마련하게 된다. 이러한 미국의 농촌역사경관 관련 프로그램들에는 여러 농촌보호 관련 지원법에 따른 보존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농촌역사경관을 국가적 문화재로 등록을 유도하는가 하면, 정부 및 민간단체 상호간 매우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농촌역사경관의 문화재 보존에 대한 관심도 그동안 우선시하였던 도시의 역사적 랜드마크건물(landmark building)과 역사적 지구(district)로부터 농촌 읍(rural town), 농촌 마을을 비롯한 농장 건물과 농장 구조물, 특히 농지 보호로 차츰 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³⁾

이에 본 연구는 아직까지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농촌역사경관 보호에 대한 의미있는 시사점들을 찾고, 제도적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나아가 농촌역사경관의 문화적 경관 개념과 접근 방법에 초점을 두면서, 현재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촌역사경관에 대한 국가적문화재 등록의 특성 고찰 및 국가문화재 등록 현황 분석을 통하여 미국농촌경관의 보호 및 관리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미국의 농촌역사경관 관련 문헌 검토, 관련

* 정회원, 호남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교수, 공학박사

1) 현재 국가등록문화재(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로 약 80,000건이 등록되어 있고, 그 중 2,400건의 국가랜드마크문화재(National Historic Landmarks)와 27건의 국가유산문화재(National Heritage Areas)가 있다. 여기에 12억불의 보존기금과 약 \$300억불의 세금감면이 문화재 복원에 지원되고 있다.

2) 1970년대 말 ASLA(American Society of Landscape Architects)에 의한 문화자산에 대한 경관 보존과 회복의 논의 그리고 AHLPA(Alliance for Historic Landscape Preservation)에 의한 계

획 경관과 토속 경관에 대한 논의로서 현재 미국의 국립공원관리국(NPS)에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3) Norman Tyler, Historic Preservation, W. W. Norton & Company, 2000, p.208

규정 및 정책 검토, 해당 기관의 관련 웹페이지 Database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미국의 국가적 문화재에 관한 중추적 업무를 맡고 있는 내무부 소속의 국립공원관리국(National Park Service, 이하 NPS)⁴⁾에서 소장하고 있는 다수의 농촌역사경관 문화재 등록관련 보고서⁵⁾를 보존프로그램을 통해 검토 분석하였다.

웹페이지에서 Database 검색은 국립공원관리국에 탑재된 국가등록시스템인 국가등록문화재(NRHP) 프로그램과 국가랜드마크문화재 프로그램(NHL), 국가등록정보시스템(National Register Information System) DB, 문화자원관리(Cultural Resource Management) DB 등을 이용하였다.⁶⁾ 현황 분석 자료는 미국 53개 주를 대상으로 국가등록문화재와 국가랜드마크문화재로 등록된 농촌역사경관 문화재를 기본 자료로 활용하였다.

2. 미국 농촌역사경관의 보존 특성

2.1 농촌역사경관 보호의 개념과 그 흐름

농촌경관(rural landscape)은 농촌(rural)⁷⁾을 배경으로 형성된 경관의 한 형태이다. 초기에는 풍경(scenery)의 뜻으로 이해되는 시골 풍경(rural scenery) 혹은 농업 풍경(agricultural scenery)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1900년대에 들어서서 경관(landscape)개념이 정착되면서 '도시 경관(urban landscape)' 및 '계획된 경관(designed landscape)'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자주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근래에 전개되고 있는 농촌경관의 개념은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경관을 총체적으로 보는 '문화적 경관(Cultural Landscape)'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농촌의 문화적 경관 접근은 농촌환경의 경관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제정된 우리나라의 '경관법'(2007)도 이러한 경관자원의 보존·관리 및 형성에 관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그동안의 자연환경 중심의 경관 관리에서 벗어나 역사문화유산의 관리에 관한 지위를 확보함으로써,⁸⁾ 도시뿐만 농촌의 문화적 경관을 보호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문화적 경관을 문화재로 인식하고 보호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유네스코(UNESCO) 제16회 세계유산위원회

(1992년)에서 규정한 '문화적 경관'에 대한 개념 정의와 기준⁹⁾에 따른 영향이 크다. 유네스코에서 규정한 문화적 경관 개념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과의 불균형을 없애고 다양한 문화유산의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가장 주목을 끌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의 문화재관련법의 변화¹⁰⁾에 확산을 주게 된다.

미국(정부)에서 문화적 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정책은 유네스코(UNESCO)의 개념 접근과 더불어 미국의 문화재 전반의 보존 정책과 활동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국립공원관리국(NPS)의 개념 정의에 기초하고 있다. 여기에서 문화적 경관을 "역사적사건, 활동이나 인물과 연관되거나, 다른 문화적 미학적 가치를 보여주는 어떤 지리적 구역"으로 보며, 역사 경관(Historic Site), 계획 경관(Historic Designed Landscape), 토속 경관(Historic Vernacular Landscape), 민족 경관(Ethnographic Landscape)이라는 네 가지 경관 형태¹¹⁾로 분류하고 있다.

농촌역사경관은 유네스코와 NPS의 문화적 경관의 분류 속에서 보면 유기적으로 진화된 경관과 토속 경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NPS에서는 문화적 경관으로 특별한 보존자원의 한 형태로 보고, 1984년 '농촌역사지구(Rural Historic District)'에 대한 문화적 경관성 연구'라는 보고¹²⁾를 통해 문화적 경관을 확인하고 정의¹³⁾하는 기준 지침을 마련한다. 이 NPS의 지침이 농촌역사경관을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기본 개념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농촌역사경관에 대한 보존 개념은 1980년대 이후 다소 변화를 가져온다. 1980년대를 미국 문화재 보존 운동에서 'business'시대로 규정하였듯이¹⁴⁾ 농촌이 지닌 문화적 경관가치를 단순히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역사 환경이 지니는 경관가치를 증대시키고 보호하는

9) 인간이 거주하면서 만들어낸 다양한 문화적, 자연적 요소의 총체로서 경관을 이해하는 '문화적 경관'개념을 세계유산조약에 도입하였다. 1994년 수정된 지침에 따르면 자연성의 정도, 자연에 대한 인간행위의 영향 정도에 의해 '확실히 의도된 경관(Clearly Defined Landscape)', '유기적으로 진화된 경관(Organically Evolved Landscape)', '관련하는 경관(Associative Cultural Landscape)'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Arnold R. Alanen and Robert Z. Melnick, Preserving Cultural Landscape in America, 2000, p.8)

10) 한국의 2007년 경관법 제정, 유럽의 EU경관협약 제정, 일본의 2004년 경관법 제정과 문화재보호법 개정 등.

11) Arnold R. Alanen and Robert Z. Melnick, 앞 책, p.8

12) Melnick, Robert Z. with; Spohn, Daniel and; Saxe, Emma Jane, Cultural Landscapes: Rural Historic Districts in the National Park Service., Washington, D.C.: National Park Service, 1984.

13) 미국 국립공원관리국에서 작성한 정기보고서(bulletin)에 의하면 "농촌 사람들에 의해 역사적으로 사용되어 왔거나 농촌 사람들의 활동, 점유 혹은 개입에 의해 형성되거나 혹은 변경된 지역으로서 농작물, 건물 및 구조, 도로, 수로 및 자연으로 구성된 지역이 의미있는 집합성, 연결성, 지속성을 유지하며 형성된 지리적 지역이다"(Arnold R. Alanen and Robert Z. Melnick, 앞 책, p.115)

14) Norman Tyler, 앞 책, p.51

4) 우리나라의 '문화재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다.
5) NPS Digital Library의 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 Inventory - Nomination Form 등
6) <http://nrhp.focus.nps.gov>, <http://www.nps.gov/history/nhl/>, <http://www.nps.gov/history/nr/research/nris.htm>, <http://crm.cr.nps.gov/search.cfm> 등을 참조
7) 본 논문에서 '농촌(rural)'의 용어는 농촌관련 유사어(agriculture, farm, ranch, farm village, countryside, hamlet)의 기능적 규모적 범위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또한 농촌지역 및 농촌마을(rural village, rural town, hamlet, small town)은 미국인구조사국의 규정에 따라 5만이하의 인구가 살고 있는 곳으로 본다.
8) 우리나라 경관법 제3조 1항 및 제3조 3항 참조.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¹⁵⁾ 1970년대 민간단체인 내셔널 트러스트에 의해 주도된 ‘Main Street Movement’¹⁶⁾가 바로 그것이다. 특히 ‘지방메인스트리트 프로그램(Local Main Street Programs)’¹⁷⁾은 농촌역사경관의 경제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전개되는 실용주의적 보존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농촌마을의 활발한 투어리즘은 이러한 농촌역사경관 자원의 경제적 활성화¹⁸⁾ 및 재생산적 가치¹⁹⁾를 모색하기 위한 전형적 접근이다.

2.2 농촌역사경관의 보존 요소

표 1. 농촌역사경관의 특성과 구성요소

특성	구성요소
토지이용 및 활동	목초지, 방목지, 과수원, 야외 작물장, 공유지, 묘지, 경기장, 공원, 채석장, 벌목지
공간조직패턴	도로망, 토지 이용, 자연 형태, 집단 군락
자연환경에 대한 반응	토지 이용, 경주 방식, 건축 재료, 건물 디자인, 수송방법
문화적 전통	토지이용, 건물/구조, 인종/종교 기관, 커뮤니티 조직, 건설방법, 교역 기술, 공예기술
순환네트워크	도로, 시내, 운하, 고가도로, 철도, 수로.
경제설정	담장, 벽, 토지이용, 식물, 도로, 수역/관개, 하수구
토지이용관련 식물	관목, 농작물, 담장 수목, 자연수목, 과수원, 작은 숲, 식립 용지, 정원, 가로수, 목초지.
인공시설물	-건물: 주택, 학교, 교회, 바깥채, 축사, 상점, 지역사회 강당 및 기차역 -구조물: 댐, 운하, 갭도, 곡물 창고, 사일로, 교량, 흙둑 및 고가도로 -특정물: 기념물, 탈곡기, 사과즙 공장.
클러스터	마을센터, 농장, 사거리, 항구, 복합 농작 및 체광시설물.
고고학 부지	길의 흔적, 수림지, 폐허지, 농장, 광산, 관개 시설, 선창, 채석장.
세부 구성물	보도교, 우로, 도로 표식, 묘지석, 독립 수목, 담장 기둥, 보도석, 압거, 샘, 폐허지

국가문화재 등록을 위한 농촌경관자산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역사적 건물(historic building)(그림1 참조)²⁰⁾, 역사

- 15) 미국 National Trust의 정의에 의하면 농촌역사경관 보존은 ‘문화적 의미성을 지닌 건물 및 마을의 보존을 포함하는 시골(countryside)의 보호이자. 지방의 경제 및 사회 공공시설들의 가치 증대 및 주변 환경의 보호이다.’(William J. Murtagh, Keeping Time, John Wiley & Sons, Inc., 2006, p.120)
- 16) 미국의 National Trust에 의한 농촌지역의 문화적 경관 보존 운동(Rural Preservation, 1979년), 농촌문화유산의 투어리즘(Heritage Tourism, 1989년)운동 등이 있다.
- 17) 커뮤니티 중심으로 역사보존의 맥락 속에서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으로 초기에는 도시의 다운타운을 을 중심으로 시작하였으나, 1989년부터 인구 5천명 이하의 소도시를 중심으로 시행하기 시작하면서 2004년 이후 전통적 상업지구, 건축물, 장소 보호에 지원하고 있어, 경제성 높은 농촌경관 보존형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Samuel N. Stokes, Saving America's Countryside: A Guide to Rural Conservation, Johns Hopkins Univ. Press, 1997, pp.62-67), (<http://www.mainstreet.org>)
- 18) 박광순, 문화의 경제학, 유평출판사, 서울, 2007, p.189
- 19) 이왕기, 농촌 문화환경의 보존과 경관가치의 재생산 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 건축, 2005.4, p.44

지구(historic district)(그림2 참조)²¹⁾, 역사 부지(historic site)(그림3 참조)²²⁾, 역사 구조물(historic structure)(그림4 참조)²³⁾, 역사 대상물(historic object)로 분류된다. 여기에서 보통 대목장 혹은 농장 커뮤니티와 같이 대단위 토지와 여러 건물, 구조물, 부지를 포함한 대규모 복합 경관은 ‘역사 지구’로 분류되고, 반면 과수원과 같이 건물이나 구조물을 갖지 않은 소규모 경관은 ‘역사 부지’로 분류된다.²⁴⁾

특히 농촌 지역에서 문화적 경관은 역사적 활동과 필수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역사 지구를 형성하는 기본 경관으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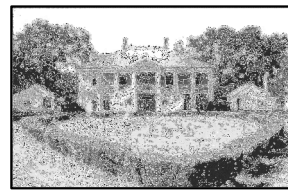


그림 1.
Evergreen Plantation,
Wallace, Louisiana
(출처: NPS Digital Library)



그림 2.
Amana Colonies, Middle
Amana, Iowa
(출처: NPS Digital Library)



그림 3.
St. Croix Boom Site,
Stillwater, Minnesota
(출처: NPS Digital Library)



그림 4.
Peavey-Haglin Grain Elevator,
St. Louis Park, Minnesota
(출처: NPS Digital Library)

미국 농촌환경에서 문화적 경관을 구성하는 보편적인 경관 요소는 농사 지역, 오픈스페이스, 자연 지역 등의 자연 경관과 건물, 구조물, 조경물 및 고고학 부지 등의 역사문화경관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농촌역사경관의 범위는 대개 농업지역 뿐만 아니라 광산업, 어업, 휴양, 수송, 보전 및 문화 활동을 위해 역사적으로 이용해 온 장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경관의 구성요소 또한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NPS에서 농촌경관의 지정을 위해 지침으로 규정된 보존요소를 경관 특징별로 살펴보면 <표 3>과 같다.²⁵⁾

- 20) 1832-1930년, 미국남부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본래의 모습을 유지한 플랜테이션 농업단지 내의 농가와 농경지이다.
- 21) 1854-1874년, 독일로 부터 건너온 이민자들이 세운 공통체적 종교사회 마을이다.
- 22) 1840-1914년, 미네소타주에서 가장 일찍이 오랫동안 매우 중요한 벌목 저장 지역이다.
- 23) 1890-1900년, 직경 20인치 높이가 125인치인 곡물저장 실린더로 북미에서 첫 구조물이다.
- 24) Arnold R. Alanen and Robert Z. Melnick, 앞 책, p.112
- 25) National Resister Bulletin 30, Guidelines for Evaluating and Documenting Rural Historic Landscapes, U. S. Department of the Interior, 1989, PP.15-18 제정리

2.3 농촌역사경관 문화재의 보호 체계

(1) 보호관련 규정

미국에서 농촌역사경관 지정의 미국에서 모든 문화재 보존을 위한 기본 틀은 국가문화재보호법(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 of 1966)²⁶⁾에 따르며, 농촌역사경관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역시 이 법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연방정부, 州정부, 지방정부, 인디안정부, 및 시민단체들 상호간 문화재 보존의 협력 체계를 조성하고, 연방기관이 미국의 역사, 건축, 고고, 기술에 있어서 의미심장한 여러 역사자산 형태를 조사·확인한다. 이러한 정보가 문화재 보존계획과 사업에 이용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화재 보존을 위한 국가등록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의미있는 국가적 자산뿐만 아니라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자산까지 연방정부가 등재된 모든 지구, 장소, 건물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문화재보호법(NHPA)외에 농촌역사경관의 문화재 보호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 1966년에 공표된 교통부법(Department of Transportation Act)은 교통시설 사업에 있어서 농촌과 국립공원, 위락지, 야생 생물 서식처, 역사 유적 등의 사용 승인을 받도록 하여 농촌역사자원에 대한 국가사업의 영향 평가를 확대하였다. 또한 국립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1970)은 환경정책심의회에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문화재보호법 제106조를 한층 강화시켰다. 연방 소유지와 미원주민 땅에 대한 고고학적 자원을 더 긴밀히 보호하기 위하여 승인없이 고고학 발굴을 금지시킴으로써 고고학적 가치를 지닌 농촌역사경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고고자원보호법(Archeology Resources Production Act, 1979)을 두고 있다.

(2) 세제 관리

미국에서는 역사건축물의 훼손을 막고 이를 효과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문화재 보존 활동에 대한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Tax Incentive for Historic Preservation)를 도입한다. 미연방의회는 건물 신축할 때 세제 혜택과 문화재 수복(rehabilitation)시 세제 혜택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1976년 세계개혁법(Tax Reform Act)을 만든다. 이는 역사적 건축물의 보호가 사회개발의 방해물로 여기기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인식 전환의 기회가 되는 등, 문화재보존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²⁷⁾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는 보다 다양한 세제혜택 모형이 요구되면서, 역사 건물의 수복에 25% 세금 감면을 제공하는 경제회복세금감면법(ERTA, 1981)을 만들었고, 기존 세계개혁법(1986)을 개정하여 지정

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에 대해 차등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제혜택을 통한 합리적인 문화재 관리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세액공제 프로그램은 비록 대부분이 도시에 있는 자산 특히 대부분 임대주거가 세액공제를 통해 복원되었지만, 많은 소도시(small town)과 농촌의 헛간(barn)을 포함해서 농촌 자산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농촌역사경관 보존문제는 농지보존 관련법의 영향과도 크게 상관한다. 미국은 도시화과정에 따른 스프롤현상으로 대도시 교외의 무분별한 개발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한 농지 훼손을 막기 위해 일찍이 1950년대부터 농지개발 용도가 아닌 농업적 가치에 기반을 둔 농지세의 차별과 세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대표적 예로서, 일찍이 농촌경관 보호 노력을 추진해온 미국 메인주는 1975년에 농장·공개농지 세제법(Farm and Open Space Tax Law)을 제정한 바 있으며, 전체 농지 중 12%가 참여할 정도로 재산세 감면을 통해 농촌경관 보존을 유도하고 있다.²⁸⁾

(3) 관리 체계

① 연방정부의 관리 체계

연방정부 차원에서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역할은 문화재 보존기금조성 및 보존활동을 위한 전체적인 체계를 세우고, 州정부 간에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연방정부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기관은 국립공원관리국(NPS)로서 문화재보호법(NHPA)의 제106조(Section 106 review)에 따라 문화재보존자문위원회(ACHP)을 두고 국가등록(National Register)으로 지정하거나 지정할 가치가 있는 역사문화자산에 영향을 끼치는 사업에 대하여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활동을 검토·조언하며,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활동과 사업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문화재의 파괴·훼손을 점검한다²⁹⁾. 이 밖에 연방정부는 소유 자산과 보존 활동을 모니터링하면서 역사적 건물의 복원(rehabilitation) 사업자금에 대해 세금 감면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② 州정부의 관리 체계

州정부의 역할은 역사문화자산 조사하고 연방정부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일을 한다. 州정부의 농촌역사경관 문화재의 보호 관리는 州문화재관리국(SPHO)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농촌역사 자산과 부지의 체계적 조사, 문화재 지정 업무 관장, 문화재 보호기금 관리, 지방정부기관에 대한 협조, 문화재보호법 제106조 상담, 세금감면 심의 및 추천 등이 주요 업무이다. 주요 사항의 결정은 州문화재심의위원회(State Historic Preservation Review Board)를 통해 이루어지고, 국가등록을 위해 제출된 신청서를 심의하고 州정부에 통과 여부를 권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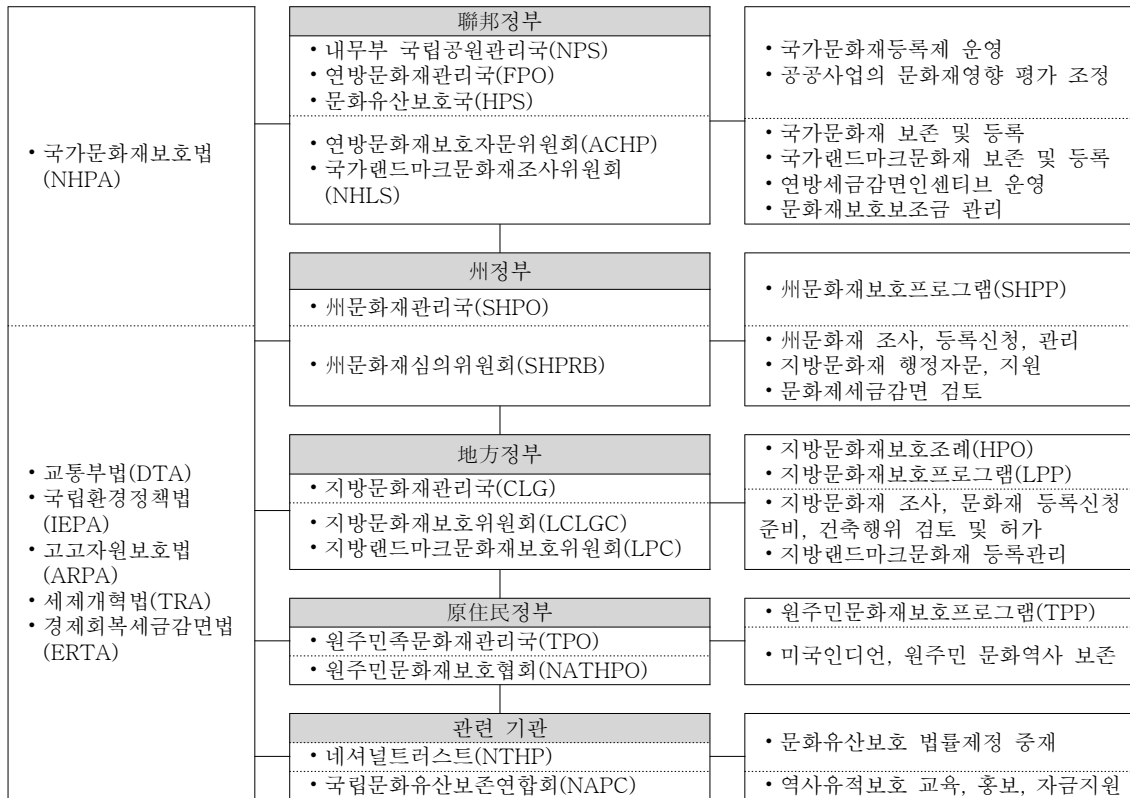
26) William J. Murtagh, 앞 책, pp.175-176

27) Norman Tyler, 앞 책, p.51

28) Thomas G. Allen, Farm Property Taxes in Maine, Univ. of Maine, 2000, Miscellaneous Report 418(http://www.umaine.edu/mafes/elec_pubs/miscrepts/mr418.pdf)

29) William J. Murtagh, 앞 책, p.52

표 2. 미국의 국가문화재 관리 체계



③ 지방정부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州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아 인증지방정부(Certified Local Government, 이하 CLG)를 둘 수 있다. 여기에서 역사문화자산의 문화재 지정 및 보호 조례를 만들고, 지방문화재보호위원회 및 지방문화재 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한다.³⁰⁾

지방정부는 지방조례³¹⁾를 통해 농촌역사 자산을 실질적으로 규제하고 보호하는데³²⁾, 자체적으로 농촌역사지구나 농촌역사랜드마크를 조례로 지정하여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지방문화재심의위원회³³⁾를 두고 지역 내의 농촌역사경관 문화재 조사, 문화재등록 신청자료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주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화재와 주변 건축물의 신축, 개축, 변경 등에 관하여 심의한다. 미국의 농촌역사경관 문화재의 관리에 따른 정부간 상호 행정 체계 및 역할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3. 미국 농촌역사경관 문화재의 국가등록

미국의 국가문화재등록은 의미있는 농촌역사경관을 국가등록문화재(NRHP)로 지정하여 등록한다. 특별히 모든 미국인을 위해 의미를 지닌 장소는 미국의 유산을 설명하고 해석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가치나 질을 소유한 농촌역사경관은 다시 국가랜드마크문화재(NHL)로 다시 지정한다.

3.1 등록 기준

(1) 국가등록문화재(NRHP)로서 등록 기준

미국에서 농촌역사경관의 국가등록문화재는 미국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하는 국가문화재 등록 기준(National Register Criteria)에 따라 적용되고 있다. 국가문화재 등록 기준에 따르면³⁴⁾, 농촌의 역사문화자산이 문화재 등록을 위해서 다음의 네 가지 유형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이 의미를 가져야 한다. 즉 역사 속에서 의미있는 사건(event)과 관련된 농촌자산(CRITERION A)³⁵⁾(그림5 참조), 역사 속에서 의미있는 인물(person)의 생활과 관련되었던 농촌자산(CRITERION B)³⁶⁾(그림6 참조), 의미있는 디자인(design)이나 기술(technology)의 유형, 기간, 또는 방법의

30) Samuel N. Stokes, 앞 책, p.204

31) 지방문화재보호조례(Historic Preservation Ordinance) 혹은 지방랜드마크보호조례(Landmark Preservation Ordinance)

32) Norman Tyler, 앞 책, p.55

33) 대개 Historic Preservation Committee, Historic District Commission, Landmark Preservation Committee 등을 둔다.

34) William J. Murtagh, 앞 책, p.181

35) 개척, 정주, 인종, 전통, 경작, 축산, 목장, 관개, 벌채, 원예, 채광, 낚시, 양식 및 휴양 등 다양한 농촌 활동 등이 해당한다.

36) 농촌 커뮤니티의 역사적 발달이나 경제 번영에 기여한 역사적 인물의 성공 및 활동상 등이 해당한다.

특유한 특성을 구현하는 농촌자산(CRITERION C)³⁷(그림 7), 선사시대 또는 역사시대의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농촌자산(CRITERION D)³⁸(그림 8 참조)이다. 그러나 공동 묘지, 출생지, 역사적 인물 무덤, 종교 기관의 소유 혹은 종교 목적 자산, 원 위치에서 이동된 구조, 개축 건물, 사실상 기념 자산, 의미성을 획득한 지 50년 이내의 농촌자산은 국가등록기준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

등록기준에 따른 농촌경관자산의 평가는 역사적인 맥락에 의해 중요하다고 인식된 테마, 자산 유형, 경관 특성을 판단하여 이루어진다.



그림 5.

Bagg, Frederick A. and Sophia, Bonanza Farm, Mooreton, North Dakota (출처: NPS Digital Library)



그림 6.

Sierra Bonita Ranch, Bonita, Arizona (출처: NPS Digital Library)



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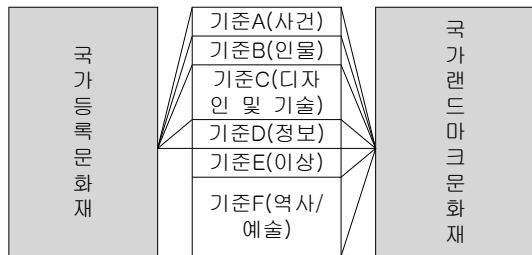
Las Trampas Historic District, Las Trampas, New Mexico (출처: NPS Digital Library)



그림 8.

Lehner Mammoth-Kill Site, Hereford, Arizona (출처: NPS Digital Library)

표 3. 미국의 국가문화재 등록 기준



(2) 국가랜드마크문화재로서 등록 기준

미국에서 역사문화 자산은 국가등록문화재 중, 국가적 차원에서 의미 수준이 높게 평가되어 모든 미국인에게 문화유산의 설명하고 해석하는데 특별한 가치나 특질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된 역사적 랜드마크에 대해 국가랜드마크문화재(National Historic Landmarks)로 지정하고 있다.

37) 농장의 배열과 같은 공간 조직, 건물의 디자인 양식이나 방법, 기술적 혁신을 반영한 시설 및 체계 그리고 예술적 가치가 높은 정원이나 조성 농장 등이 해당한다.

38) 토지 이용, 정주 패턴, 전통 의식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선사시대 또는 역사시대의 유물 등이 해당한다.

현재 국가등록문화재 중에서 약 3%정도가 해당된다.

국가랜드마크문화재 등록기준(NHL Criteria)³⁹에 따르면 농촌역사경관의 국가랜드마크문화재 등록에 관한 기준의 적용은 다음의 농촌역사경관 자산 중 하나 이상이 의미성을 가져야 한다. 즉, 미국의 국가적 패턴에 뚜렷이 대표되는 사건과 관련된 농촌자산, 국가적으로 뜻 깊은 인물의 생활과 중요하게 관련된 농촌자산, 미국에 대한 위대한 이상을 대표하는 농촌자산, 미국 건축의 시기, 작품, 건설 방법 면에서 뚜렷한 특징을 가진 농촌자산, 미국에 대한 특별한 역사적 혹은 예술적 의미성을 집단적으로 구성하거나 또는 인생이나 문화의 길을 뚜렷하게 기념하고 계몽하는 농촌자산, 미국의 전역에 걸쳐 농촌에 관한 높은 수준의 이론, 개념 및 아이디어로 영향을 주거나 새로운 문화성을 드러냄으로써 과학적 중요 정보를 제공해온 농촌자산이다.

3.2 등록준비 작업

농촌역사경관의 등록 과정은 일반적으로 확인, 평가, 등록이라 3단계 진행과정을 거친다. 여기에서 확인 과정과 평가 과정은 국가문화재 등록신청을 위해 농촌경관의 특성을 미리 조사하고 평가하는 준비 과정이다.

표 4. 국가문화재등록의 진행과정

단계	내용	
1.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적 맥락 파악 •문헌자료 연구 •현장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자산 특성조사 -농촌자산 테마연구 -역사맥락 보고서
2.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관의 의미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기준 적용 -의미영역 선정 -의미기간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적 보전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존 정도 적용 -보존성 변화 확인 -기여자원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관 구역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자산 정의 -포함여부 결정 -접경구역 선정
3.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적 등록절차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양식 (NPS 10-900) 작성

(1) 확인 작업

국가문화재 등록 요건에 필요한 농촌경관자산의 유무를 확인하고 역사적 맥락(Historic Context)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연구 및 현장답사 작업이 수행된다.

농촌역사경관은 경관을 형성해 온 사람들의 신념, 전통 및 가치를 반영하는 역사적 맥락으로서 농촌경관의 테마, 시기 및 지리적 영역을 찾아낸다. 역사적 맥락에 따른 농촌경관의 테마는 주로 정주, 낙농업, 철도 수송, 광업 등과 관련하며, 농촌의 토지 이용 및 정주 패턴, 자연 환경 대응, 문화적 전통 등의 농촌역사경관의 특성들이 테마 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농촌경관의 역사적 맥락성을 파악하기 위한 작업에는 농

39) National Park Service, <http://www.nps.gov/nhl/Nom.htm>

촌의 여러 역사자료들이 이용되며, 농촌경관의 특성요소별 (표 1 참조)로 확인한다. 역사적 맥락 파악과 아울러 역사 자산이 본래대로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보통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다. 현장 조사에는 주로 역사학자, 조경사학자, 건축사학자, 건축가, 조경사, 고고학자 및 인류학자들의 종합적 조사가 필요하다. 지역에 따라서 문화지리학자, 식물생태학자, 민속학자와 함께 수행한다.

(2) 평가 작업

① 역사적 의미성 평가

국가문화재로 등록 자격을 갖기 위하여 역사문화자산은 우선 국가적으로 역사적 의미성(Historic Significance)을 가져야 한다. 농촌경관은 주로 해당 지역의 역사, 건축, 고고, 기술, 문화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의미성은 농촌역사경관이 국가등록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따라서 농촌역사경관의 의미성 평가는 어떤 특별한 역사적 맥락이 자산에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서 결정하며, 의미영역과 의미시기를 찾아낸다.

농촌역사경관의 의미 영역⁴⁰⁾은 역사적으로 그 지역 사회의 발달과 정체성에 영향을 끼친 분야로서 농업을 비롯하여 주로 건축, 고고, 커뮤니티개발계획, 조경, 산업, 정주, 공업기술, 보존, 건설기술, 과학 관련 분야가 해당된다.

농촌역사경관의 의미 시기는 농촌자산이 중요한 사건, 활동, 인물, 그룹, 토지 이용 등과 연관되었을 때, 또는 중요한 물리적 특성을 얻게 된 때로서 해당 의미 영역에서 의미있게 기여한 시기 및 기간에 근거한다.

② 역사적 보존성 평가

역사적 보전성(Historic Integrity)은 역사자산의 현재 보존 상태 및 경과 보존 상태에 대한 정도이다. 농촌경관의 보전성 평가에는 국가등록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7가지 보전성 평가 요소인 위치(location), 디자인(design), 배경(setting), 재료(materials), 작업기술(workmanship), 감각(feeling) 및 관계성(association)에 따른다⁴¹⁾. 보전성에 관한 최종 결정은 의미성을 전하는 경관 자산의 전반적인 상태에 근거하기 때문에 경관 특성의 강도와 의미 기간 동안 변화된 성격 및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③ 경계영역 설정

농촌역사경관의 경계영역(Boundaries)을 잡는 일 역시, 국가문화재 등록 여부의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영역 설정 순서는 먼저 역사경관특성의 조사를 통해 어떤 역사적 경관이 포함될 것인지를 결정한다. 다음으로 역사적인 자산내의 어떤 땅까지 오늘날 역사적인 의미성 및 보전성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지를 결정한다.

40) NPS에서는 전체 영역의 범위를 1.선사고고학 2.역사고고학 3.농업 4.건축 5.예술 6.통상 7.커뮤니케이션 8.공동체 계획 9.자원보호 10.경계 11.공업 12.개혁적 정주 13.산업 14.발명 15.조경 16.법 17.문학 18.군사 19.종교 20.과학 21.조각 22.사회적/인류학적 23.극장 24.수송로 분류하고 있다.

41) National Resister Bulletin 30, 1989, pp.2-23

3.3 등록 절차

표 5. 주정부차원의 국가문화재 등록 절차

1. 소유자, 지방정부, 사회단체, SHPO : 등록 신청서 작성
2. 주정부사무소 : 州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
3. 지방정부사무소 : 시민의견 수렴
4. 국립공원관리국(NPS) : 최종 등록자격 결정
5. 연방기관: 역사보존자문위원회자문, 합의각서작성

(1)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 절차

국가문화재등록을 위한 지정 신청하려면, 먼저 농촌역사경관의 소유자, 지방정부, 관련 사회단체 또는 SHPO, FPO or TPO 직원이 등록신청서(NPS 10-900)을 준비한다. 주정부 차원에서 등록하려면 <표 5>와 같은 절차를 수행한다. 먼저 등록신청 준비자는 등록신청서를 완성하고 SHPO에 제출한다. 등록신청서는 미국역사학, 건축역사학, 건축학, 고고학 그리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州문화재심의위원회(SHPRB) 심의를 회의록을 거친다.

심의위원회는 그 자산이 국가등록기준에 부합 및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위원회의 의견으로 SHPO에 권고한다. 그리고 농촌자산 소유자와 지방정부 담당관(local official)은 시민들에게 문화재 지정 의도를 공지하고 공개 의견을 받는다. 이때 자산의 소유자는 등록 승인에 동의 또는 반대할 수 있는데, 농촌자산의 소유자들이 등록에 반대하면 그 자산은 국가문화재에 등재될 수 없다.

대다수 개인 자산 소유주들이 등록에 반대하지 않으면 SHPO는 등록 자격을 결정하도록 국립공원관리국(NPS)에 관련 기록물을 발송한다. NPS에서 국가등록 기록물이 다시 평가되는 동안 공개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연방 등록처의 홍보물에 게재된다. 여기에서 신청한 농촌역사경관 자산이 문화재로 등록될 것으로 자격이 결정되면, 연방기관(Federal Agency)은 연방 사업(Federal Project)이 그 농촌 역사 경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NPS의 역사보존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Historic Preservation, 이하 ACHP)로 부터 의견을 받는다. 이때 ACHP는 문화재보호법(NHPA)의 제106조에 따라 수행한다.

제106조 작업 흐름을 간략히 살펴보면 <표 6>과 같다⁴²⁾. 먼저 사업을 관찰하는 연방기관은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사문화자산을 확인하고, 국가등록에 등재될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SHPO나 THPO와 협의한다. 연방기관은 연방 사업이 역사자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SHPO 등 관련사무소와 상의하고, 조치를 강구한 합의각서(Memorandum of Agreement/MOA)로 마무리한다. 마지막으로 합의각서가 완성되면 연방기관은 그에 따라 사업을 진행한다.

42) William J.Murtagh, 앞 책, p.52 재정리

표 6. 문화재보호법 제106조 작업 과정

1. 제 106조 절차 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방업무 확인 SHPO/THPO와 협의 시민참여 방안 계획 관련 당사자 확인
2. 역사자산 확인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문화자산 확인 역사적 의미성 평가
3. 역효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효과의 기준 적용
4. 역효과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 계속 합의각서 작성

(2) 국가랜드마크문화재의 등록 절차

국가랜드마크문화재 등록 절차는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절차와 다른 기준과 절차를 가지고 있다.

국가등록문화재로 새롭게 등록되는 건물은 국립공원관리국에 의해 검토되나, 이미 등록된 건물은 국가등록사무소에서 그 자산을 NHL지정 대상으로 고려할 것인지를 국립공원관리국의 조사위원회(NHL Survey)에 상정하여 심의한다. 심의에 통과된 농촌역사경관 자산은 국가적 역사적 문화적 보존 분야의 사회지도급 시민을 포함시킨 국립공원국자문위원회(Nation Park System Advisory Board)에 의해 잠정적 랜드마크로 추천된다. 그러나 잠정적 NHL이 정식 NHL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테마연구(Theme Studies)에 따른 충분한 의미가 확인되어야 한다. 테마연구 과정은 미국에서 NHL 지정을 위한 특색있는 절차로서 미국역사에서 특별한 지역과 관련한 자산의 상대적인 비교분석을 제공함으로써 자산을 확인하고 지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⁴³⁾. 잠정적 NHL로 추천된 자산을 소유한 개인 및 단체는 정식 NHL 지정에 찬성하거나 혹은 반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국립공원국자문위원회는 공개회의를 통하여 지정 여부를 판단하고,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내무부에서 NHL로 지정한다. 최종적으로 농촌경관이 국가랜드마크문화재로 지정되면 국립공원관리국은 NHL지원단(National Historic Landmarks Assistance Initiative)을 통해 NHL 보존을 돕도록 위탁한다. 소유자는 기금이 필요할 때 연방정부의 역사보전 자금 지원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국가문화재의 등록 철회

국가문화재로 등록된 농촌 자산이라 할지라도 등록 철회가 가능하다. 국가는 국가등록문화재나 국가랜드마크문화재로 등록된 농촌 자산을 소유자가 자산의 특성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막지 못하며, 소유자의 요청이나 내무부의 발의에 의해 지정이 철회될 수도 있다. 등록된 농촌자산이 국가적 의미성을 상실할 정도로 변경되었다면 등록 철회 기준에 따라 문화재 등록을 철회시킬 수 있다.

표 7. 농촌역사경관 국가랜드마크문화재 목록⁴⁴⁾

분류번호	농촌역사경관 명칭	소재州	소유권	평가기준	지정시기	자원유형
PA01	Evergreen Plantation	LA	P	A,C	1992	BD
PA02	Warner's Ranch	LA	P	A,B	1961	BD
PA03	Amana Colonies	IA	P	A	1965	DS
PA04	Bagg, Frederick A. and Sophia, Bonanza Farm	ND	P	A	2005	DS
PA05	Honey Hollow Watershed	PA	P	A	1969	DS
PA06	Brook Farm	MA	P	A,B	1965	SI
PA07	Porter Farm	TX	P	A	1964	SI
PA08	Sitka Spruce Plantation	AK	P	A	1978	SI
PA09	Sanborn Field and Soil Erosion Plots	MO	PS	A	1964	SI
PB01	Waterford Historic District	VI	PL	A	1970	DS
PB02	Peavey-Haglin Grain Elevator	MN	P	C	1981	ST
PC01	Sierra Bonita Ranch	AZ	P	B	1964	BD
PC02	Sun, Tom, Ranch	WY	P	A	1960	BD
PC03	Swan Land and Cattle Company	WY	P	A	1964	BD
PC04	University of Wisconsin Dairy Barn	AZ	P	A	2005	BD
PC05	Lehner Mammoth-Kill Site	AZ	PF	D	1967	SI
PC06	Old Stone Gate, Chicago Union Stockyards	IL	PL	A	1981	ST
PD01	Desert Laboratory	AZ	PS	A	1965	BD
PD02	New York Botanical Garden	NY	P	A	1967	DS
PD03	Arnold Arboretum	MA	P	B	1965	ST
PE01	Lightfoot Mill	PA	P	A,C	2005	BD
PE02	Madison Historic District	IN	PF	A,C	2006	DS
PE03	Old Sugar Mill Of Koloa	HI	P	A	1962	SI
PF01	St. Croix Boom Site	MA	PS	A	1966	SI
PG01	Carlsbad Irrigation Project	NM	PF	A	1964	ST
PG02	Old Mission Dam	CA	PL	A,C	1963	ST
PG03	Espada Aqueduct	TX	PF	A,C	1964	ST
PH01	Fountain Lake Farm	WI	PL	B	1990	ST
PH02	Grant-Kohrs Ranc	MT	PF	A,C	1960	DS
PH03	Greenway Court	VI	P	A	1960	BD
PH04	J A Ranch	TX	P	B	1960	DS
PH05	Kennedy Farm	MD	P	B	1973	BD
PH06	King Ranch	TX	P	A	1961	DS
PH07	London, Jack, Ranch	CA	PS	B	1962	BD
PH08	Los Cerritos Ranch House	CA	PL	C	1970	BD
PH09	Petaluma Adobe	CA	PS	B,C	1970	BD
PH10	McCormick, Cyrus, Farm and Workshop	VI	P	A	1964	DS
PH11	Rankin Ranch	MT	P	B	1976	DS
PH12	San Bernardino Ranch	AZ	P	A,C	1964	DS
PH13	Trevino-Uribe Rancho	TX	P	A,C	1998	BD
PH14	Veblen, Thorstein, Farmstead	MN	P	B	1981	BD
PH15	Warkentin Farm	KS	P	B,C	1990	DS
PI01	Boley Historic District	OK	PL	A	1975	DS
PI02	Las Trampas Historic District	NM	P	C	1967	DS
PI03	Kelley, Oliver H., Homestead	MN	PS	B	1964	DS
PJ01	Deere, John, Home And Shop	IL	P	B	1964	BD
PJ02	Knapp-Wilson House	IA	PS	A,B	1964	BD
PJ03	Morrill, Justin S., Homestead	VT	PS	B	1964	BD
PJ04	Newlands, Francis G., Home	NV	P	B	1963	BD
PJ05	Sotterley	MD	P	A,C	2000	BD
PJ06	Watson, Elkanah, House	NY	P	B	1964	BD
PJ07	Wood, Jethro, House	NY	P	B	1964	BD
PJ08	Magnolia Plantation	LA	PF	A,C	2001	DS
PJ09	Marlbourne	VI	P	B	1964	DS
PJ10	Oakland Plantation	LA	PF	A,C	2001	DS
PJ11	Warkentin Farm	KS	P	B,C	1990	DS
PJ12	Morrow Plots	IL	PS	A	1998	SI
PJ13	Langstroth Cottage	OH	P	B	1981	BD

43) <http://www.nps.gov/nhl/themes/themes.htm>

3.4 농촌역사경관 국가문화재의 등록 현황

국립공원관리국(NPS)의 국가등록문화재 DB프로그램에서 의미 영역을 '농업(Agriculture)'인 농촌자산과 관련한 국가등록문화재(NRHP)는 무려 4,644건이 등록되어 있다. 대부분 역사 건물들과 역사 지구들이 등록되고 있으며, 미국의 53개 주 중에서 200건 이상 등록수를 보유한 한 주는 North Carolina州, Virginia州, Massachusetts州이다.

분석의 편의상, 국가등록문화재중 역사적 경관성이 뚜렷한 농촌역사경관을 국가랜드마크문화재 DB프로그램에서 타입별로 선정하면 농지 9건, 농업 부속건물 2개소, 축산 시설 6개소, 어업시설 3건, 원예시설 3건, 관개시설 1건, 처리시설 3건, 농가 15건, 창고 3건, 농업커뮤니티 13건 등 58건으로 나타난다(표 7 참조).

표 8. 자원유형별 국가문화재 등록 건수

구분	building	district	site	structure	object	계
NRHP	2838 (61.1)	1488 (32.0)	203 (4.4)	117 (2.5)	3 (0.6)	4644 (100%)
NHL	23 (39.7)	20 (34.5)	8 (13.8)	7 (12.0)	0 (0)	58 (100%)

농촌역사경관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 분포를 자원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역사적 건물(61%)과 역사적 지구(32%)의 두 경관자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표 8 참조).

반면 등록기준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기준A와 기준C인 의미있는 사건 및 디자인/기술 관련 문화재가 다수를 차지하고, 기준C나 기준D인 인물이나 잠재정보 기준관련 문화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의미 시기별로 보면 19C부터 20C중반까지 의미 기간을 둔 농촌자산들이 문화재로 다수 등록되고 있으나, 미국 식민시대(16C-18C후반)와 신생국가시대(18C후반)의 자산은 상대적으로 적은 등록 건수를 나타낸다(표 9 참조).

표 9. 의미시기별 국가등록문화재 지정 건수

시기 (년)	1500- 1599	1600- 1649	1650- 1659	1700- 1749	1750- 1799	1800- 1849	1850- 1899	1900- 1949	1950- 2000
건수	12	27	78	278	688	2390	4279	4153	364

표 10. 지정시기별 국가랜드마크문화재 지정 건수

지정시기 (연대)	1960	1970	1980	1990	2000
건수	34(58.6%)	7(12.0%)	4(7.1%)	6(10.3%)	7(12.0%)

44) 농촌자산별 분류인 PA: agriculture field, PB: agriculture outbuilding, PC: animal facility, PD: fishing facility, PE: hoticultural facility, PF: irrigation facility, PG: processing, PH: dwelling, PI: storage, PJ: farm community이다.
소유별 분류인 P: Private, PL: Public Local, PS: Public State, PF: Public Federal이다.
자원별 분류인 BD: Building, DS: District, SI: Site, ST: Structure, OB: Object이다.

표 11. 농촌역사경관 문화재의 자산별 사례







농지 경관	
Sitka Spruce Plantation  (출처: NPS Digital Library)	Unalaska, Alaska (PA08) - 테마: European Colonial Exploration and Settlement. - 1805년, 러시아의 알래스카 식민화 상징이면서 구미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조립사업 지역
농장 부속건물 경관	
Waterford Historic District  (출처: NPS Digital Library)	Waterford, Virginia (PB01) - 테마: Architecture. - 로우던 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정착지로 18세기말과 19세기 시골마을의 원형적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농촌마을 지구
축산농장 경관	
Sun, Tom, Ranch  (출처: NPS Digital Library)	Casper vicinity, Wyoming (PC02) - 테마: Westward Expansion of the British Colonies and the U.S - 1872년, 목축업 선구자 프랑스 캐나다인 개척자가 이룬 농장 건물, 현재 물론교 방문자 센터
원예농업 및 가공시설 경관	
Madison Historic District  (출처: NPS Digital Library)	Madison, Indiana (PE02) - 테마: Expressing Cultural Values - 1817~1939년, Greek Revival 양식과 이탈리아양식을 유지하여 국가적으로 농촌 소도시 미국적 가치를 반영
농업커뮤니티, 주거농가 경관	
Boley Historic District  (출처: NPS Digital Library)	Boley, Oklahoma (PI01) - 테마:Farming Communities - 철도 건설을 위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차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클라호마에 설치된 가장 큰 도읍
Oakland Plantation  (출처: NPS Digital Library)	Natchez, Louisiana (PJ10) - 테마: Architecture - 미국에서 가장 완벽하게 시골식 French Creole 건축 전통을 보존으로 미국남부에 남아있는 대단위 플랜테이션 농장 중 하나

표 12. 등록기준별 국가랜드마크문화재 등록 건수

기준 유형	기준A	기준B	기준C	기준D	기준A + 기준B	기준A + 기준C	기준A + 기준C
등록 건수	21	16	3	1	3	11	3

국가랜드마크문화재로 한정하여 기본적인 현황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지정 시기별 건수는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시기인 1960년대(약 59%)에 집중 지정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지정되고 있다(표 7, 표 10 참조). 등록기준별로 볼 때, 랜드마크문화재는 주로 미국 전체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이나 국가적 인물에 나타나며, 의미있는 사건과 복합된 기준이 지정되고 있다(표 7, 12 참조). 문화재의 소유권별로 보면, 농촌역사경관의 국가랜드마크문화재는 개인 소유가 많으나 각 정부 소유의 비율(34%)도 높은 편으로 농촌역사경관 문화재도 공공 자산화 경향이 뚜렷함을 알 수 있다(표 7 참조).

4. 결론

이상으로 미국 농촌역사경관의 국가등록 보존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찾을 수 있다.

1. 농촌역사경관은 국가등록문화재와 국가랜드마크문화재로 지정하여 등록될 수 있고, 소유자의 요청이나 내부부의 발의에 의해 지정이 철회될 수 있다.

2. 농촌역사경관 국가문화재는 국가문화재보호법(NHPA) 및 세제지원법 등 여러 농촌보호 관련 지원법에 의해 농촌역사경관의 보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3. 농촌역사경관 국가문화재의 관리 체계는 국립공원관리국(NPS)을 중심으로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원주민정부 및 민간단체 상호간 유기적인 연계를 이루고 있다.

4. 국가문화재등록을 위한 농촌역사경관의 등록은 역사적 맥락을 확인하고 등록평가기준에 따른 의미성 및 보존상태를 평가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5. 농촌역사경관의 국가등록을 위한 행정 절차는 등록신청 후, 농촌경관자산에 대한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 역사보존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국립공원관리국(NPS)에서 등록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연방 사업을 조절한다.

6. 농촌역사경관의 국가문화재 등록현황으로 국가등록문화재(NRHP)는 약 4,600건 정도이며, 국가등록문화재중 역사적 경관성이 뚜렷한 국가랜드마크문화재(NHL)는 약 60여건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농촌역사경관의 국가문화재 보호·관리는 체계적인 등록 과정에 따라 다양한 농촌역사 자산들을 적절히 보호하면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경관가치를 보호하려는 미국정부와 민간단체의 보호 운동 그리고 의미 부여를 통한 미국적 정체성을 발견하려는 노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제 우리도 점차 사라져 가는 농촌의 문화적 경관가치를 재인식하고, 전국에 산재하는 의미있는 농촌역사경관의 체계적인 조사 연구와 보호 제도 마련을 통해 문화재 지정 및 경관보호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강동진, 미국 지방도시의 역사적 중심지로 재할성화 방법 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42권 4호, 2007
2. 김광임 외, 농촌의 경관가치 평가와 관리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5
3. 김기호, 역사경관관리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41권 5호, 2006
4. 김란기, 경관법체제하의 역사문화유산의 보전전략,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5
5. 김승근 외, 마을계획에 따른 농촌경관과 지역성 고찰, 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10권 4호, 2008
6. 목정훈, 미국의 경관보호 시책과 시사점, 한국도시설계학회 세미나 자료, 제3주제 발표, 2005
7. 박광순, 문화의 경제학, 유헤출판사, 2007
8. 박근수, 한국근대건축물의 보전관리지침 구성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9. 박소현, 미국의 역사보존 제도과 정책을 위주로 한 보존사례, 한국역사학회 제13권 1호 논문, 2004
10. 성주인, 농촌의 경관관리 실태와 정책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11. 이동근 외, 농촌경관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경관자원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 Vol; 11, No.2, 2005
12. 이왕기, 농촌 문화환경의 보존과 경관가치의 재생산 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 건축, 2005
13. 임승빈, 경관분석론, 서울대학교출판부, 서울, 1991
14. Arnold R. Alanen and Robert Z. Melnick, Preserving Cultural Landscape in America, Johns Hopkins Univ. Press, 2000
15. James Marston Fitch, Historic Preservation, Univ. of Virginia Press, 2001
16. Jae Sang Byeon,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Historic Landmarks in the United States, Architectural Research, Vol 6, No.1, 2004
17. Jane Grenville, Managing the Historic Rural landscape, Routledge, 1999
18. Michael A. Tomlan, Preservation of What, For Whom?, The National Council for preservation Education, 1998
19. New York State Division of Housing and Community Renewal, Neighborhood and Rural Preservation Programs, Annual Report, 2007
20. Norman Tyler, Historic Preservation, W. W. Norton & Company, 2000
21. National Resister Bulletin 30, Guidelines for Evaluating and Documenting Rural Historic Landscapes, U. S. 26. Department of the Interior, 1989
22. Samuel N. Stokes, Saving America's Countryside: A Guide to Rural Conservation, Johns Hopkins Univ. Press, 1997
23. William J. Murtagh, Keeping Time, John Wiley & Sons, Inc., 2006
24. <http://nrhp.focus.nps.gov>,
25. <http://www.nps.gov/history/nhl/>
26. <http://www.nps.gov/history/nr/research/nris.htm>
27. <http://www.mainstreet.org/>

(接受 : 2009.04.06)